

# 제41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8)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5)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9)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1)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7)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0)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9)
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9)
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7)
3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0)
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3)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6)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8)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8)
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4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1)
4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4)
4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1)
4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9)
4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8.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1)
4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 
-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 54.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1)
  -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3)
  -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 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 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 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 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 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 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 69.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
  - 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
  -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0)
  -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8)
  -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5)
  -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3)
  - 75.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 7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1)
  - 7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7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7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80.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6)
  - 8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4)

8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권칠승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 번호 2203545)

83.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7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83.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1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	13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9) ..	1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4) ..	13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8) ..	13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	13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13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5) .....	13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	13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	13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	14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9) ..	14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14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1) .....	14
1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	14
1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14
1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	14
1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	14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7) ..	14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	14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14
23.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0) .....	14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	14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9) ..	14

---

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	14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	14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9) .....	14
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7) .....	14
3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0) .....	14
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3) .....	14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	14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14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	14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	14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6) .....	14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8) .....	14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	14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8) .....	14
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	14
4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14
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1) .....	14
4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4) .....	15
4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1) .....	15
4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9) .....	15
4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15
4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15
48.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1) .....	15
4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	15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	15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	15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15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	15
54.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1) .....	15

---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	15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	15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	15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3) .....	15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	15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	15
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	15
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	15
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	15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	15
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	15
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	15
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	15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	15
69.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 .....	15
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 .....	15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0) .....	15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8) .....	15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5) .....	15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3) .....	15
75.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	16
7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1) .....	16
7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16
7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16
7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16
80.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6) .....	16
8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74) .....	16
8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권칠승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 번호 2203545) .....	16

---

(17시38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11월 18일 새로 임명되어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벽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다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민형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민형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41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필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1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 원 중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기본 구상 미완료 및 토지

오염 물질조사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 원 중 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청와대 관람객 감소를 고려할 때 개방운영 프로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적 추진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 및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 원 증액하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 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 원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매체 활용 정책홍보의 국가 주요 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은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광산업 용자 지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용자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우수선수 양성 지원은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은 체육계의 공공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 사업 확대를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2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20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산 긴급보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9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유산국민선택법인 지원 예산은 각각 2억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

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소위원장께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초래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승수 위원님께서 결의문의 취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의견을 모아서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이런 급증하는 문화·예술·체육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보완방안을 결의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의문인만큼 우리 문체위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문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저는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KTV의 정치행위를 비판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 국민들을 고소했던 KTV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방침이 킴스 티비(Kim's TV), 김건희 TV, KTV에 대한 강력한 징계적 의미로 예산 50% 삭감을 내부적으로 결의하고 소회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이 끊임없이 직원들의 안정성을 계속 고민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애초의 목표액보다 적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병채 실장, 이은우 KTV 원장의 과정 속에서의 사실상의 망동은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노들을 자아냅니다. 반드시 징계성 인사 조치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KTV의 그동안의 행태들은 장관께서도 죽 들었을 겁니다. 고소 문제뿐만 아니고 황제관람 영역까지, KTV가 사실상 정치행위에 나서면서 김건희 호위방송으로 김건희 심리경호방송으로 전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과 그 분노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저는 장관께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제와 오늘 과정 그리고 지난 금요일 과정에 있어서 KTV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많은 양보를 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적어도 함께 이 국정을 동반하고 동행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소한의 조치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책방송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소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병채 실장과 이은우 KTV 원장이 정말 무례하고 부조리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양문석 위원께서는 망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로 이렇게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예산 삭감이 대폭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는지 야당 위원 방을 일일이 이렇게 이분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아주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면 불편해지고 해고되는 건 비정규직일 거야. 봐봐, 예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 약자들에 대한 공격성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또 심지어는 특정 위원에 대해서 희롱에 가까

운 그런 발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심야에 소위에 와서 사과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더니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 회피성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분들이 국회 예산심사의 과정 혹은 권한을 정말 우롱하려고 작정을 했나 싶은 아주 유감스러운 그런 처사를 보였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그냥 잘 단속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이 과정에서 그 자리에 계셨던 예산소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이은우 원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필요한 조치를 좀 꼭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내용을 좀 더.....

○민형배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본인하고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추가적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예산 중에 국가유산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비 예산을 삽감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유물 매입 등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인의 이사장이 퇴임을 했고, 운영비가 2억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원 운영비 11억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1억 정도만 삭감하고 1억은 다시 증액시켜 주는, 부활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견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또는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국가유산청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추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민형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우리 부 예산안은 온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우리 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민형배 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체계 구현을 위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앞서 민형배 소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결의문이 지금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83.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8시03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초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9)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4)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8)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5)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9)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1)
1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7)
1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1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0)
1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1)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7)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23.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0)
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9)
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9)
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7)
3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0)
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3)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7)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6)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8)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8)
4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4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1)

- 
4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24)
4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31)
4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9)
4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1)
4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54.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1)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3)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6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6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
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69.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
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0)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8)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5)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3)

- 
- 75.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 7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1)
  - 7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7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7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80.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6)
  - 8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4)
  - 8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권칠승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3545)

(18시04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은 이 법률안에 대한 수석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내고 난 뒤에 대체토론에 앞서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4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7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5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김성원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작·배포·유통 등 외에 그 이용에 대하여도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용기 의원안의 불법 프로그램 등 제작·배포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불법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해서 필요 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전에 현재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3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윤덕 의원안, 제26항 정부 제출안, 제27항 박정하 의원안은 국립박물관의 신규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공립박물관을 신규 설립할 때 문체부장관에게 받아야 했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지연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가기준 마련 등 설립타당성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데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재정자립도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초지자체가 공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사전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이원화하는 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신동욱 의원안은 초상화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수행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첫째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를 조사할 것, 둘째 오구라컬렉션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 셋째 우리 정부에 오구라컬렉션을 반환받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도쿄박물관의 오구라컬렉션에는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유물, 공식적인 발굴 기록이 없거나 불법적인 도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유물 등 부당하게 수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화재의 반환, 문화재의 원상회복, 피침령국에서 유래한 문화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75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관광지 등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사업자 간 분양·임대차계약 등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 부담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김재원 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안은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민형배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내용으로, 숙박시설 이용 등에서 다자녀가구의 불편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4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중단의 황희 의원안, 진종오 의원안, 신동욱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문체부장관의 징계재심의 요구권 등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감독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중단의 임오경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재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담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여가 확대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중단의 강유정 의원안은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규제의 필요성,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하단 민형배 의원안은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마지막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웰니스 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덕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께서 치유관광산업법에 관해서 제가 법안 절도를 했고 표절을 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기술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2년 5월에 통과되었고 전북은 1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그다음 해 23년 3월 13일에 특별자치도들만 치유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그런 지역 차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21대 제가 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전라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배제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2024년 6월 14일 또다시 강원·전북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배현진 의원 개인을 넘어 이제 국민의힘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며 지구 내 관광산업 협력방안, 관광상품 마케팅·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세부 재원 조달까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또 강원도를 차별하는 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습니다. 배현진 의원안에 공동발의한 유상범 의원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이번 총선에서 백두대간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이라는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과연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는 이 법안에 공동발의한 저의가 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배현진 의원에게 본인의 이름이 빛나는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제가 진지하게 조언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의원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와 전북이 빠진 이 치유관광산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건 반드시 반대하고 또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발의된 이 법이 함께 논의되어서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법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드리고.

제가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현진 위원과 통화가 원활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피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여야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늘 우리 문체위가 국민을 위한, 그런 지역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법안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현진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사전에 하고 왔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좀 들으셔야지요.

○김윤덕 위원 제가 바빠서……

○배현진 위원 법안을 내시는데 법안을 모르고 지금 아무 말씀이나 하시고, 제가 그리고 언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김윤덕 위원 그 법안에 써 있어요.

○배현진 위원 21대에 ‘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그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공당의 사무총장이 법안 만들면서 지금 이유를 모르잖아요. 관광기금과의 이중 예산 지급을……

○김윤덕 위원 위원님, 손은 잘하고 하세요, 샷대질하지 마시고.

○배현진 위원 예.

이중적인……

○김윤덕 위원 그리고 똑바로 좀 하세요.

○배현진 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예?

이 사안은 부처의 모든 관계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21대에 법안을 마련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만 존재할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라고 조항을 넣은 이유는 관광기금과의 예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와 협의 끝에 저희가 넣어 놓은 예외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22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강원과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이 탄생을 하였고 역시 기준상으로는 관광기금이 특별자치도에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빼야 함이 마땅하나 저희가 정확히 날짜를 확인한 바로 6월 27일에 전북도에서 문체부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부탁했고 6월 28일 전북도의 의견을 문체부가 수용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실이 제정법을 수년간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안에 동의를 했고 문체부와 함께 상의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8월 21일 전북도 측에 문체부의 수용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고 8월 28일 소위 자료에 분명히 ‘전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소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전 간사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역을 차별해서 전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배제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희가 그간 오랫동안, 특히 문체위에서는 안무, 문학, 영화 분야에서의 여러 표절 시비 논란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와 야 이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오랫동안 비일비재하게 진행돼 온, 특히 이 제정법과 같은 특별한, 의원들이 공들여 수년간 공청회와 상임위, 세미나 등을 거쳐서 만들어 온 이러한 법안들이 무시로 베껴지는 그러한 악습과 관행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작성하고 이런 것을 다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을 위원장께도 제가 누차 드렸고, 위원장께서도 저의 깊은 그 취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실제로는 김윤덕 위원께 상당한 많은 말씀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게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법안을 하는 가운데 대표발의한 법안 하나를 지금 저격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의원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열어 놓고 참고해서 작성은 했지만 표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자 수를 세보시면 서른 자도 되지 않는 문장 한 줄, ‘맨발 걷기’ 단어 네 자 이것을 제외한 모든 조사까지 동일합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헤럴드경제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와 함께 21대 2022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 왔고 당시 민주당의 문체위 간사이인 김윤덕 위원께서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과 또 윤석열 정부가 2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23년,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법안을 왜 집행하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에 21대에 폐기됐던 법안이고……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역의 영세하게, 코로나 때 무너져 내린 관광자원을 되살리고자 했던 법안입니다. 왜 제가 치유관광산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이 부분을 본인께서 전북도당위원장 하신 그 역사 때문에 전북도를 뺏다고 지금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카피해 놓고 부끄러움조차 모르신다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신상발언을 갈음하고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계류시켜 주십사 민주당 위원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소위 때 미리 읽어 보지 않고 와서 못 했다라는 답변으로 저의 심사를 미루신 것을 제가 한번 양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현진 대표법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서, 문체위 상임위의 일원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우리 스스로 양심에 따라, 국민들도 논문 표절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금 보시고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의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 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것을 카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차별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좀 논의를 통해서……

○**배현진 위원** 제정법 모르세요, 제정법?

○**임오경 위원** 배 위원님, 말씀 중에는……

○**배현진 위원** 고쳐 쓴다 자체가 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그게.

○**임오경 위원** 상대 위원이 얘기할 때 좀 가만히 계셔 주시고 듣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배현진 위원**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제정법, 제정안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도 생략을 할 수 있고 또 여야 합의하에도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21대에서 준비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22대에 들어오자마자 제정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눈앞에 놨었지만 여당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5일 만에…… 그 법안은 저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5일 만에 상대 의원의 법안을 공동발의해 제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두 군데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22대가 시작된 후에 그 말씀을 전달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위원님이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빠져 있는 부분을 좀 넣어 주시고 그랬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배현진 위원** 아니, 6월에…… 심사자료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임오경 위원** 그리고 이것을 카피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카피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별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 없이…… 그리고 개인이 법안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그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결례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인의 법안 발의 성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대한민국에, 현장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문체위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야 위원님들 거론하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우선 임오경 간사님의 발언 중에 두 차례 끼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정법과 개정법의 차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정법은 기존에 없던 법안을 우리가 새로이 뼈대를 세우기 위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이고 개정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의 부족한 부분 또 시대상에 또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고 고쳐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기에 어제 위원장님과 깊이 상의하였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깊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함께 상의를 깊이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억울한 사정, 그런 것 다시는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 각자의 그리고 의원실 보좌진들 각자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오경 간사님께서 억울하셨다면 그 부분, 저의 지금 의견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회 내에서 개정과 제정의 차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임오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제정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를 세우는 법안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저 배현진 만의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가 남달리 다르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수차례 김윤덕 위원께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했음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고 전화받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차례 빼고. 그때도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끊으셨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법안을 내는 입법 과정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본을 세우기 위해 계류시켜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며, 그리고 김윤덕 위원께서 잘못 알고 덜 알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갈음하며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세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2항까지 80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최웅천 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분들과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출석 위원(15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청가 위원(1인)**

신동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융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종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대변인직무대리 김재현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 윤태욱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송윤석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1월 13일 회부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이상 3건 11월 15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1. 1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1)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11. 14.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6)

1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